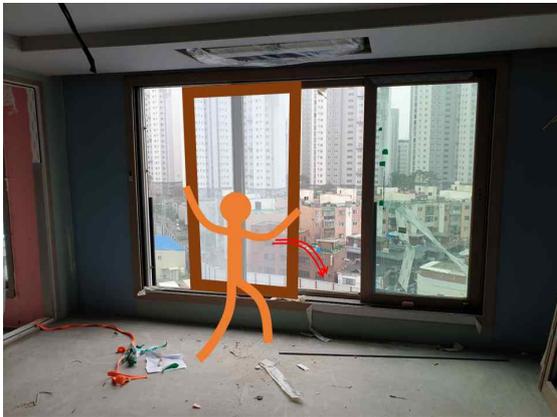


기존에 설치된 세대내부 거실창호 해체 및 이동 중 개구부로 추락

공사명	○○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	발생일시	2019.12.11.(수) 09:40경
재해형태	추락	재해정도	사망 1명
소재지	○○시 ○○○구	공사규모	지하4층 지상29층 14개동
재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력업체(창호 유리공사 업체) 소속 재해자(유리공, 만 54세)가 ○ 거실창호 외측 중앙의 접합유리(Fix창, 대형창호 개구부) 설치를 위하여 ○ 기 설치되어있던 내측 창호를 해체하여 이동하려던 중, ○ 무게중심을 잃고 중앙의 대형창호 개구부로 추락하여 외부 시스템비계 상단(높이 약 10.8m)에 1차 추락 후, 지상 바닥(높이 약 12.4m)으로 2차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		

재해상황도



안전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실창호 외측 중앙 접합유리 설치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·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미시공된 거실창호 외측 중앙 접합유리 시공을 위해 내측 방향에 기 설치된 슬라이딩창호와 같은 중량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량물의 해체·운반에 따른 추락,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○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지상 7층에 미시공으로 발생한 대형 벽면 개구부 주변에서 중량물을 해체하여 이동 및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,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를 해당 작업장 주변에 견고히 설치하고, - 해당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 이상 유무 등을 철저히 점검하며 작업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
-------------	---



현장 전경사진



재해발생 위치 (개구부)